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2000	사회개발비	34,168,555	30,142,320	4,026,235	[국 279,730 도 457,551 시 3,398,273 분 △109,319]
2300	사회복지장비	34,168,555	30,142,320	4,026,235	[국 279,730 도 457,551 시 3,398,273 분 △109,319]
2330	가정복지	34,168,555	30,142,320	4,026,235	[국 279,730 도 457,551 시 3,398,273 분 △109,319]
2331	가정정책	2,181,819	2,039,769	142,050	[국 43,324 도 108,903 시 99,142 분 △109,319]
100	경상예산	102,484	106,370	△3,886	
120	경상적경비	102,484	106,370	△3,886	
	201 일반운영비	29,424	31,310	△1,886	
		26,724	28,310	△1,586	01 일반운영비 ◎부서운영기본경비 △1,026 ●일반수용비 경정(50,000원X19명X12월X95/100)-기정(50,000원X19명X12월) = △570 ●급량비 경정(40,000원X19명X12월X95/100)-기정(40,000원X19명X12월) = △456 ◎여성위원회 참석수당 △560 ●회의 및 여성발전기금 심의 경정(4,200,000원X90/100)-기정(4,200,000원) = △420 ●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수당 경정(1,400,000원X90/100)-기정(1,400,000원) = △140
		2,700	3,000	△300	02 행사운영비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부천여성문화제 행사진행 및 홍보물 제작비 경정(3,000,000원X90/100)-기정(3,000,000원) = △300
	301 일반보상금	13,700	15,700	△2,000	
		12,900	14,900	△2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◎여성위원회 워크숍 경정(0원)-기정(2,000,000원) = △2,000
200	사업예산	1,979,335	1,833,399	145,936	[국 43,324 도 108,903 시 103,028 분 △109,319]
210	보조사업	1,190,067	1,028,399	161,668	[국 43,324 도 108,903 시 118,760 분 △109,319]
	301 일반보상금	4,800	4,800	0	
		4,800	4,800	0	01 사회복지적수혜금 ◎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경정(4,800,000원)-기정(4,800,000원) = 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2,400 - 4,800 = △2,400 (시) 2,400 - 0 = 2,400
	307 민간이전	1,179,267	1,017,599	161,668	
		861,812	745,219	116,593	02 민간경상보조 ◎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경정(70,000,000원)-기정(60,000,000원) = 1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35,000 - 30,000 = 5,000 (시) 35,000 - 30,000 = 5,00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 △ 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모자복지시설 운영(이양사무) 경정(172,710,000원)-기정(124,739,000원) = 47,97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30,000 - 30,000 = 0 (시) 77,971 - 30,000 = 47,971 (분) 64,739 - 64,739 = 0
					◎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경정(20,000,000원)-기정(12,106,000원) = 7,894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4,500 - 4,500 = 0 (시) 12,394 - 4,500 = 7,894 (분) 3,106 - 3,106 = 0
					◎가정,성폭력피해자 치료.회복 프로그램 운영 경정(25,000,000원)-기정(20,000,000원) = 5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5,000 - 20,000 = 5,000
					◎가정, 성폭력 피해자 교정.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정(31,728,000원)-기정(30,000,000원) = 1,72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1,728 - 30,000 = 1,728
					◎가정,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경정(3,000,000원)-기정(2,500,000원) = 5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,000 - 2,500 = 500
					◎여성 상담실 종사자 보수교육 경정(0원)-기정(1,000,000원) = △1,00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
					[경정]	[기정]	[증감]
					(국) 0 -	500 =	△500
					(도) 0 -	250 =	△250
					(시) 0 -	250 =	△250
					◎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		
					경정(87,000,000원)-기정(42,500,000원) =		44,500
					[경정]	[기정]	[증감]
					(국) 30,450 -	29,750 =	700
					(도) 6,525 -	6,375 =	150
					(시) 50,025 -	6,375 =	43,650
					◎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		
					경정(153,351,000원)-기정(153,351,000원) =		0
					[경정]	[기정]	[증감]
					(도) 123,829 -	22,016 =	101,813
					(시) 29,522 -	22,016 =	7,506
					(분) 0 -	109,319 =	△109,319
		309,955	264,880	45,075	05 민간위탁금		
					◎아이돌보미 사업		= 104,018
						(국)	72,812
						(도)	15,603
						(시)	15,603
					◎아이돌보미 인건비		
					경정(0원)-기정(72,000,000원) =		△72,000
					[경정]	[기정]	[증감]
					(국) 0 -	50,400 =	△50,400
					(도) 0 -	10,800 =	△10,800
					(시) 0 -	10,800 =	△10,80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100 경상예산	123,750	70,100	53,650	
	120 경상적경비	123,750	70,100	53,650	
	307 민간이전	113,250	59,600	53,650	
		88,250	34,600	53,650	02 민간경상보조 ◎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= 43,650 ◎실버드림악단 악기등 장비 구입 = 10,000
	200 사업예산	15,991,940	11,990,560	4,001,380	[국 101,440 도 △28,155 시 3,928,095 분 0]
	210 보조사업	15,771,940	11,790,560	3,981,380	[국 101,440 도 △28,155 시 3,908,095 분 0]
	201 일반운영비	8,880	0	8,880	
		8,880	0	8,880	01 일반운영비 ◎노인돌보미 홍보 = 8,880 (국) 6,216 (도) 1,332 (시) 1,332
	307 민간이전	9,342,619	8,823,174	519,445	
		7,781,156	7,885,284	△104,128	02 민간경상보조 ◎유급 봉사원 확대 운영 경정(156,000,000원)-기정(312,000,000원) = △156,000 [경정] [기정] [증감] (도) 46,800 - 144,000 = △97,2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시) 109,200 - 168,000 = △58,800
					◎노인 돌보미 지원
					경정(583,738,000원)-기정(681,725,000원) = △97,987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408,616 - 515,900 = △107,284
					(도) 87,561 - 110,550 = △22,989
					(시) 87,561 - 55,275 = 32,286
					◎독거노인 도우미 파견
					경정(305,520,000원)-기정(500,220,000원) = △194,7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213,864 - 378,544 = △164,680
					(도) 45,828 - 81,117 = △35,289
					(시) 45,828 - 40,559 = 5,269
					◎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
					경정(718,000,000원)-기정(647,458,000원) = 70,542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도) 139,050 - 140,676 = △1,626
					(시) 494,196 - 422,028 = 72,168
					(분) 84,754 - 84,754 = 0
					◎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					경정(359,948,000원)-기정(215,076,000원) = 144,872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도) 43,672 - 43,672 = 0
					(시) 275,888 - 131,016 = 144,872
					(분) 40,388 - 40,388 = 0
					◎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
					경정(1,262,700,000원)-기정(1,124,000,000원) = 138,70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		
					[경정]	-	[기정]	=	[증감]
					(국)	631,350	562,000	=	69,350
					(도)	315,675	281,000	=	34,675
					(시)	315,675	281,000	=	34,675
					◎시니어클럽 운영				
					경정(261,184,000원)-기정(261,184,000원) = 0				
					[경정]	-	[기정]	=	[증감]
					(도)	22,500	15,000	=	7,500
					(시)	219,198	226,698	=	△7,500
					(분)	19,486	19,486	=	0
					◎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= 33,600				
							(국)		16,800
							(도)		8,400
							(시)		8,400
					◎노인일자리사업(은빛사랑나눔단지원) = 7,300				
							(도)		3,650
							(시)		3,650
					◎은빛사랑채 설치				
					경정(240,000,000원)-기정(180,000,000원) = 60,000				
					[경정]	-	[기정]	=	[증감]
					(도)	120,000	120,000	=	0
					(시)	120,000	60,000	=	60,000
					◎노인요양시설 운영비				
					경정(877,126,000원)-기정(936,277,000원) = △59,151				
					[경정]	-	[기정]	=	[증감]
					(도)	502,192	549,513	=	△47,321
					(시)	125,548	137,378	=	△11,83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분) 249,386 - 249,386 = 0
					◎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정(928,288,000원)-기정(979,592,000원) = △51,304
					[경정] [기정] [증감] (도) 671,911 - 723,215 = △51,304
					(시) 180,804 - 180,804 = 0
					(분) 75,573 - 75,573 = 0
		1,561,463	937,890	623,573	05 민간위탁금
					◎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경정(567,450,000원)-기정(328,945,000원) = 238,505
					[경정] [기정] [증감] (도) 90,000 - 90,000 = 0
					(시) 458,505 - 220,000 = 238,505
					(분) 18,945 - 18,945 = 0
					◎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경정(553,361,000원)-기정(318,945,000원) = 234,416
					[경정] [기정] [증감] (도) 90,000 - 90,000 = 0
					(시) 444,416 - 210,000 = 234,416
					(분) 18,945 - 18,945 = 0
					◎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경정(440,652,000원)-기정(290,000,000원) = 150,652
					[경정] [기정] [증감] (도) 90,000 - 90,000 = 0
					(시) 350,652 - 200,000 = 150,652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 △ 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5,967,386	2,967,386	3,000,000	
		5,617,386	2,617,386	3,000,000	01 시설비 ◎노인복지 시설 건립 3,000,000 (국) 0 (도) 0 (시) 3,000,000 ●무료전문요양 시설 건립 경정(2,552,386,000원)-기정(1,552,386,000원) = 1,00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776,193 - 776,193 = 0 (도) 776,193 - 776,193 = 0 (시) 1,000,000 - 0 = 1,000,000 ●노인의료 복지시설 건립 2,000,000,000원X1식 = 2,000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453,055	0	453,055	
		453,055	0	453,055	01 민간자본보조 ◎무료요양시설(성가요양원) 개보수공사 180,500,000원X1식 = 180,500 (국) 90,250 (도) 90,250 ◎중소병원 전환실비전문요양원(다니엘병원)개보수 공사 272,555,000원X1식 = 272,555 (국) 190,788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81,767
	220 자체사업	220,000	200,000	20,000	
	402 민간자본이 전	20,000	0	20,000	
		20,000	0	20,000	02 민간대행사업비 ◎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보일러교체 공사 = 20,000
	2333 아동복지	3,181,742	3,237,842	△56,100	
	200 사업예산	3,122,662	3,178,762	△56,100	
	210 보조사업	2,422,662	2,478,762	△56,100	
	301 일반보상금	781,965	838,065	△56,100	
		140,765	80,865	59,900	01 사회복지적수혜금 ◎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경정(22,500,000원)-기정(12,600,000원) = 9,9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8,820 - 8,820 = 0 (도) 1,890 - 1,890 = 0 (시) 11,790 - 1,890 = 9,900 ◎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경정(60,000,000원)-기정(18,000,000원) = 42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42,000 - 12,600 = 29,400 (도) 9,000 - 2,700 = 6,30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시) 9,000 - 2,700 = 6,300
					◎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경정(40,000,000원)-기정(32,000,000원) = 8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8,000 - 8,000 = 0
					(시) 24,500 - 16,500 = 8,000
					(분) 7,500 - 7,500 = 0
		641,200	757,200	△116,000	12 기타보상금 ◎아동복지교사(사회적일자리)지원 경정(406,000,000원)-기정(522,000,000원) = △116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84,200 - 365,400 = △81,200
					(도) 60,900 - 78,300 = △17,400
					(시) 60,900 - 78,300 = △17,400
2334	보육정책	12,689,304	12,804,049	△114,745	[국 186,766 도 387,903 시 △689,414 분 0]
	100 경상예산	248,957	249,867	△910	
	120 경상적경비	248,957	249,867	△910	
	201 일반운영비	6,540	7,450	△910	
		6,540	7,450	△910	01 일반운영비 ◎보육정책위원 심의수당 경정(2,730,000원)-기정(3,640,000원) = △910
200	사업예산	12,440,347	12,554,182	△113,835	[국 186,766 도 387,903 시 △688,504 분 0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10 보조사업	12,012,575	12,117,743	△105,168	[국 186,766 도 387,903 시 △679,837 분 0]
	301 일반보상금	5,376,230	5,661,598	△285,368	
		5,347,480	5,632,848	△285,368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◎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원 = 21,600 (도) 10,800 (시) 10,800 ◎저소득 보육료 지원 경정(4,560,904,000원)-기정(5,460,904,000원) = △90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809,308 - 1,809,308 = 0 (도) 904,654 - 904,654 = 0 (시) 1,846,942 - 2,746,942 = △900,000 ◎돌째아(0~1세)이상 보육료 지원 경정(764,976,000원)-기정(171,944,000원) = 593,032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382,488 - 85,972 = 296,516 (시) 382,488 - 85,972 = 296,516
	307 민간이전	5,991,220	5,775,020	216,200	
		5,991,220	5,775,020	216,200	02 민간경상보조 ◎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 경정(4,670,480,000원)-기정(4,525,100,000원) = 145,38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,338,676 - 2,262,550 = 76,126 (도) 1,165,902 - 1,131,275 = 34,627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시) 1,165,902 - 1,131,275 = 34,627
					◎영아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
					경정(146,000,000원)-기정(106,000,000원) = 40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73,000 - 53,000 = 20,000
					(도) 36,500 - 26,500 = 10,000
					(시) 36,500 - 26,500 = 10,000
					◎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
					경정(280,000,000원)-기정(310,000,000원) = △30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140,000 - 54,410 = 85,590
					(도) 70,000 - 27,205 = 42,795
					(시) 70,000 - 228,385 = △158,385
					◎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
					경정(66,060,000원)-기정(55,960,000원) = 10,1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33,030 - 27,980 = 5,050
					(도) 16,515 - 13,990 = 2,525
					(시) 16,515 - 13,990 = 2,525
					◎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
					경정(453,800,000원)-기정(425,000,000원) = 28,8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도) 226,900 - 212,500 = 14,400
					(시) 226,900 - 212,500 = 14,400
					◎장애아, 영아반 특수근무수당
					경정(52,740,000원)-기정(39,820,000원) = 12,92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도) 23,150 - 19,910 = 3,24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시) 29,590 - 19,910 = 9,680 ◎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정(51,000,000원)-기정(42,000,000원) = 9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30,000 - 21,000 = 9,000 (시) 21,000 - 21,000 = 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36,000	72,000	△36,000	
		36,000	72,000	△36,000	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◎병설유치원 증일반 지원 경정(36,000,000원)-기정(72,000,000원) = △36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0 - 36,000 = △36,000 (시) 36,000 - 36,000 = 0
220	자체사업	427,772	436,439	△8,667	
	307 민간이전	313,772	322,439	△8,667	
		313,772	322,439	△8,667	05 민간위탁금 ◎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지원 경정(80,000,000원)-기정(82,967,000원) = △2,967 ◎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경정(233,772,000원)-기정(239,472,000원) = △5,700

장:(2000) 사회개발비

관:(2300) 사회보장비

항:(2330) 가정복지

세항:(2334) 보육정책

세세항:(210) 보조사업

[가정복지과] 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부 서 합 계		34,168,555	30,142,320	4,026,235	